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 규정간의 부정합성 연구

- 2007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한국인의 법의식을 중심으로 -

김 은 경*

국문요약

오늘날 노골적인 성표현물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법적 규제 때문이다. 흔히 “포르노(porno)”로 불리는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제한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데 근거를 둔다. 현행법상 사범당국은 음란하다고 판단된 물건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 비판은 “과연 누가” “무엇을 음란하다고 판단하는가?”하는 것이다. 이 글은 성표현물 규제정책의 합리적 준거로서 음란성 판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사실적 지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필자는 현행 “음란성에 대한 형법적 규제담론”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음란물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둘러싼 일반인들의 인식과 정서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음란물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형법적 규정간의 괴리를 밝히고, 현실과 입법간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보호 및 청소년범죄연구실장, 사회학박사

I. 문제제기

성표현은 모든 인류역사와 함께 존재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이전에 비해 가용할 수 있는 표현매체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오늘날 뉴미디어 산업의 발흥과 함께 성과 관련된 기호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시물레이션 되면서 성과 육체에 대한 찬미, 기능화된 에로티시즘 등이 성 개방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법 규범과 성의식에 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상품화하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발전과 상업적 논리에 따라 각종 성표현물들은 더욱 자극적이고 가시적 형태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음란물의 제작과 반포를 규제하고 금지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노골적인 성표현물(sexually explicit material) 유통이 보다 광범위하고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노골적인 성표현물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법적 규제 때문이다. 흔히 “포르노(porno)”로 불리는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제한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데 근거를 둔다.¹⁾ 현행법상 사법당국은 음란하다고 판단된 물건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 비판은 “과연 누가” “무엇을 음란하다고 판단하는가?”하는 것이다. 통설과 판례는 음란성 판단주체로서 그 사회의 “보통인(평균인)” 개념을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결국 법

1) 일반적으로 “노골적인 성표현물”, “포르노”, “음란물”의 세 가지 개념(용어)은 일상적으로 서로 혼용되는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개념적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 가지 개념간의 관계는 ‘판단대상’, ‘판단기준’ 그리고 ‘판단결과’라는 논리적인 개념 구조 틀을 통해서 그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 즉, ① 판단대상은 일차적으로 가치판단이 배제된 기술적 개념으로서, 규범적 판단이 수행되는 사실적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가치중립적인 성표현물(Sexography)라는 용어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이것은 일차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대상물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② ‘포르노(porno)’는 일종의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성표현물에 대한 규범적 가치척도를 의미한다. Eysenck(1972)은 현실세계에서 특정 성표현물이 포르노로 규정될 수 있는 가치척도로서 성적 노골성, 성과 연관된 폭력성과 성적 비현실성(거짓말) 등 세 가지 차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③ 판단결과는 일정한 성표현물이 포르노 판단기준에 해당과 더불어 그 사회의 법적·도덕적 비난의 가치판단이 내려진 결과물을 의미하며, ‘음란물(Obscene Materials)’이라는 용어가 그에 적절하다.

관의 규범적 평가로 귀착하고 있다.²⁾ 그러나 인식론적으로 볼 때, 법관 개인 역시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철학, 직업적 규범과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그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의 급속한 성 개방 및 노골적인 성표현물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1967년 영화 ‘춘몽’사건 이래 성립된 형법상 ‘음란성’ 판단기준은 지난 4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이제까지 음란물을 둘러싼 담론들이 주로 법리적 차원에서 제기된 반면, 매체수용을 둘러싼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사람들의 경험과 정서 등이 다소 경시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음란물 판단주체로서 ‘사회의 일반(평균)인’ 관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규범적 평가가 거꾸로 우리사회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표하는 역설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의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은 거의 확인된 바 없다.

한때 헨리 밀러(Henry Miller)의 ‘북회귀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즈’, 로렌스(D. H. Lawrence)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등과 같은 소설을 음란하다고 여겨 금지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음란물이라고 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성의 혁명”을 체험하고 있다. 오늘날 음란하다는 것은 미래에는 예술작품으로 간주되거나,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법적 현실은 사회변화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음란물 규제정책이 오늘날 한국인이 지닌 성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국민정서)과 유리된 채 전개되고 있지는 않는 지 새로운 성찰이 요구된다.

이 글은 성표현물 규제정책의 합리적 준거로서 음란성 판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사실적 지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필자는 현행 “음란성에 대한 형법적 규제담론”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음란물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둘러싼 일반인들의 인식과 정서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

2) “...결국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관이 일정한 가치판단에 의하여 내릴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어서, 그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 할 것이니,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할 것이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판결)”

써, 음란물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형법적 규정간의 괴리를 밝히고, 현실과 입법간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에 초점을 둔다. 첫째, 한국인들이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 인식과 개별 표현수준별 규제인식을 통하여 ‘과연, 어떤 표현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현행 음란물 판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음란물 판정기준별 느낌과 정서반응을 통하여 ‘과연 어떤 기준요소가 음란개념에 속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를 추론할 것이다. 특히 각 성표현 수준별 수용자(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법의식(법감정)에 대한 조사연구는 바로 ‘음란성’ 규정에 사실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을 포함한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한 합리적인 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노골적 성표현물 규제를 둘러싼 대립적 입장과 법적 현실

1. 포르노에 대한 규제론과 개방론

흔히 “포르노”로 상징되는 노골적인 성표현물(explicit sexual material)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양극적인 견해로 몰고 가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이다.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태도는 도덕적 신념과 가치, 정치적 철학적 지향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규제와 개방의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까지 성 표현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항대립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에 갇혀서, 그것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사회과학자들은 노골적 성표현물 및 포르노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논의는 오히려 대립적인 견해를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다(Linz and Malamuth, 1993).

현재 포르노 접촉효과(영향력)에 대하여 가장 극단적으로 두 가지 연구모델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포르노가 반여성적이고 반인간적인 이데올

로기를 조장,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진시킨다는 페미니즘에 뿌리를 둔 사회적 책임모델이고(Brownmiller, 1975; Dworkin, 1981, 1985; MacKinnon, 1984; Morgan, 1980; Ratterman, 1982), 다른 하나는 포르노는 대체로 무해하며 성적 환상과 자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라는 자유주의적 견해에 근거한 것(Linz & Malamuth, 1993)이다.

첫째,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포르노가 위험스럽다”는 분명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포르노와 강간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문시하는 여러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 가령, 1970년 음란물과 포르노위원회에 의해 검토된 조사들, 1985년 캐나다에서의 [포르노와 매춘에 관한 특별위원회], 1986년 미국의 [포르노에 관한 법무장관 위원회(일명, 미즈위원회)] 모두는 비폭력적 포르노 접촉에 따른 행위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Baron et al., 1987). 포르노 접촉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경험적인 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소비의 효과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논쟁은 더 영키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험결과들에서 일치하는 점은 ‘성적 노골성, 선정성’의 행위효과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반면, ‘폭력’과 결합된 성표현물(에로틱화된 폭력)은 확실히 공격적 성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86). 즉, 성이 아니라 폭력이 반사회적 효과를 양산해내는 핵심변수라는 점이다.

둘째, 「기능적 매체로서의 포르노」: 비교문화적 조사는 포르노의 이용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일본의 경우, 소프트 포르노가 널리 접근가능하고, 뉴스나 잡지 등 대중매체에 일상적으로 드러나 있다(Abramson and Hayashi, 1984). “생생한 강간과 결박”을 주제로 한 성인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포르노는 흔히 젊은 여성에 대한 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매체에서의 생생한 강간표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일본보다 매우 높은 강간율을 기록하고 있다. 몇몇 범죄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해석하여, 포르노의 폭넓은 가용성이 오히려 성폭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Kersten, 1996: 381-395).

<표 1> 성표현물 규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입 장	영향의 문제	이론적 근거	법률적 태도
규제론 1. 도덕주의 2. 페미니즘	해 악 론	사회학습이론 1. 모방이론 (copy-cat model) 2. 중독이론 (addiction model)	1. 성윤리 도덕과의 관련 2. 법과 도덕의 중첩 3. '타인에 대한 해악'에 근거한 규제의 필요성 (* 성차별 및 여성과괴적 환경의 조장)
제한적 개방론 1. 현실주의	부분해악론 (개별적 유보적)	사회학습이론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2.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
개방론 2. 자유주의	긍 정 론 (해악불명확성)	정화이론 (catharsis model)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2. 법과 도덕의 구별 3. 성 표현 규제는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한 기본권 (표현자유) 침해

일반적으로,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 논거는 해악(harm)에 대한 규정과 그 내용에 집약된다. 그러나 “해악” 개념을 통해서도 규제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보증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불쾌함(offensiveness)과 해악(harm)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 기인한다. 특정의 성 표현이 불쾌한 것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이며,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의 반영이다(Ratterman, 1982). 또한 그것은 일반적인 이익집단의 도덕적,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유방식에 따라 극히 상대적이다. 해악에 대하여 일정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불쾌감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악의 개념에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규정하는 개인적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 가령,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 또는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률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유해한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더욱이 해악이나 불쾌함이라는 것이 과연 특정한 표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요소인지, 아니면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 이미 많은 실험연구에

서 암시하고 있듯이, 사실상 포르노적 서술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노가 지닌 해악(유해한 영향력)은 그것이 의미하는 양식과 그것이 생성되는 맥락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람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Malamuth & Briere, 1986; Malamuth & Check, 1985; Jellison, McConnell & Gabriel, 2004; Morrison, Ellis, Morrison, Bearden, & Harriman, 2006; 김은경, 1998:34-35).

2. 현행 형법적 음란 규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는 기본적으로 ‘淫亂性’(obscenity)’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淫亂性’은 ‘性的 羞恥心’ 또는 ‘지배적인 성윤리’라는 사회규범·윤리적인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³⁾ 즉 음란물의 3대 구성요건은 ①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케 하는’ 효과가 있고, ② ‘보통인(평균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면 족하고, ③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⁴⁾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이다. 현행 이러한 음란개념은 일본의 1951년 최고 재판소 ‘선데이 오락사건’ 판결에서의 외설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한국에서도 1967년 ‘영화 춘몽사건’으로부터 1969년 ‘명화나체의 마야사건’, 1975년 ‘소설 반노사건’을 거쳐, 비교적 최근인 1992년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및 1995년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판례의 기본입장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유교문화적인 전통과 가치에 따라서 성과 성 표현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다. 오늘날, 근대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태도나 관념이 많이 개방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3)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도679 판결(장정일 저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 대법원 1995.6.16 선고 94도2413(마광수 저 소설 ‘즐거운 사라’ 사건); 대법원 1975.12.9 선고 74도976판결(염재만 저, 소설 ‘반노’사건).

4)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 음란성의 판단 역시 사회의 도덕적·규범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을 공개적으로 다루거나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에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노골적인 성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즉, 性的 露骨性 그 자체가 바로 社會的 規範違反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淫亂性과 性的 露骨性을 어떻게 관계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하다. 성적 노골성 그 자체는 음란성으로 간주된다. 이제까지의 각종 판례도 해당 표현물이 현재 사회에서 관용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노골적으로 상세히 표현(선정적 자극)’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즉, 구체적·노골적 묘사는 성적으로 흥분케 하는 효과가 있고,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결국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친다는 일련의 연역도식을 가정한다.

하지만, 현행 음란물의 형법적 규정은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음란 개념이 지닌 지나친 추상성과 불명확성 때문에, 음란성을 실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해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 둘째, 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 즉 실증적인 자료와 논거가 약하다는 점,⁵⁾ 셋째, 법해석학적으로도 다른 기본권, 특히 표현 및 출판의 자유와의 상충이라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있다(김영환·이경재, 1992; 박미숙, 2001; 박강우, 2001; 권창국, 2002; 오영근, 2006). 무엇보다도 성적 노골성과 음란성을 동일시하는 현행 음란성 규정 방식은 표현의 자유 또는 선택의 자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음란 개념 및 보호법익을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화·명확화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일례로 음란이란 규범적 개념으로서 불명확하고 가치판단이 개입된 개념이므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성표현물로 바꾸거나 하드코어 포르노와 소프트코어 포르노로 나누어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김영환·이경재, 1992)이 제시된 바 있다.⁶⁾ 하지만, 두 가지 유

5) 무엇보다도 현행 음란 개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제한사유가 되는 ‘사회윤리’와 ‘건전한 성도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성적 흥분이나 자극”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며, 인간의 본능이자 생명의 근원·본질과 연결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사회윤리와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이경재, 1997:15).

6) 또한 성표현물에 대해 형법이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는 ‘사회윤리’ 등 비합리적인 관점 대신에 ‘개인적·사회적 유해성’이라는 보다 합리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

형간의 명확한 경계설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 사회 내에서 모든 이들이 노골적인 성표현물의 소지와 배포, 전시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갖지는 않을 것이며, 결코 있을 법하지도 않다. 그러나 ‘음란한’ 표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있다면, 그 때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규정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음란물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형법적 규정간의 괴리를 밝히고, ‘음란성’ 규정의 사실적 기초로서 한국인의 법 감정과 법의식 지표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III. 실험설계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6~7년 NHN, Daum 커뮤니케이션 및 Gallup이 공동으로 실시한 [성표현물에 대한 일반적 의식조사(2007)]⁷⁾에 근거한다.⁷⁾ 이 조사의 목적은 2007년 대한민국 성인들의 성표현물에 대한 일반적 관념 및 태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조사는 두 가지 형태로 수행되었다. (1) 하나는 성표현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된 설문조사로서, 주요 조사내용은 노골적인 성표현물(explicit sexual materials)에 대한 일반적 생각이나 느낌, 성 표현수준의 법적 제재(허용도) 및 음란물법 인지도 등을 파악하였다.

(2) 다른 하나는 현행 형법상 음란성 판정기준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일종의 “매체접촉 실험연구”이다. 실험연구의 핵심 주제는 현행 형사법적 음란규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성 표현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의 일반인들은 어떠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하여, 법적 성격 및 유통과정이 다른 세 가지 영상물(Clip), 즉 ① 극장에서 상영된 애정선정물, ② 기소대상 성인물, ③ 불법 유통된 포르노물에 대

다고 주장한다(김영한·이경재, 1992). 요컨대, 성도덕 등에 의해 채색된 음란성 개념만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 영역에 개입할 수 없고, ‘청소년 보호’, ‘성범죄와의 인과성’ 등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본 설문조사와 실험연구 기획 및 설계과정은 2006년 4월부터 총 8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연구진회의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한 시청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소대상 성인물은 사건 번호 [2005고단1603] [2005고단1815(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등)”으로 기소된 것으로서, www.naver.com 등 인터넷포털 VOD성인페이지에 개시되었던 동영상이다. 기소된 동영상 제목은 “구속녀의 변태행각”, “음식남녀”, “요코의 비치스토리”, “F컵 거유천국”으로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나, 법원은 2007년 6월 29일 1심판결에서 해당 영상물을 음란물로 판시하고, 유죄를 확정하였다.⁸⁾

제한된 실험연구의 특성상, 여기에서는 각 영역별로 “노골적·사실적·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비폭력적 성애장면”에 초점을 두어 실험대상 영상클립(Clip)을 구성하였다.⁹⁾ 물론 성표현 수준은 각 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① 극장상용물은 영상미학이 결합된 “에로티카”로 불릴 수 있는 영화들이며, ② 기소대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관람가’

8) 1심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대한 노골적이고 상대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의 관련성, 표현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대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해야 하여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3도4128 판결참조). 이 사건의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상물에서 남녀의 성기가 직접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남녀가 별다른 이유없이 오로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으로 채워져 있는데다가... 노골적·사실적·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지나치게 선정적·자극적인 표현으로... 오직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 사건 영상물이 포르노그래피에 비하여 노출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청할 수 없는 음란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영상물 제작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해당 영상물의 ‘음란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영상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9) 본 연구는 현행 음란물 규정의 판정기준의 타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선정적인 성애장면”에만 한정하여 다루며, 각 영역별 일반화된 표현장르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 이르는 다양한 표현수준별 비교분석은 제외한다.

로 등급관정을 받은 뒤 성인케이블 TV나 포털 성인전용관 등에서 상용되는 소위 '16mm 저예산 영화'이고, ③ 금지포르노물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포르노로서, 성기노출 등 매우 세밀하고 노골적인 표현 수준이 앞서 두 유형보다 강하다. 세 가지 범주별로 각각 성애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을 2분 내외로 추출하여 수집한(Gang Survey 방식) 여러 Clips(5개 이상)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대표성 있는 Clip을 선정하기 위한 Focus Group Interview(남녀15명씩 총30명)를 실시하였다. 영상물의 노골성 및 성적 자극성에 대한 5점 척도로 질문, 각 범주별로 평균값에 가까운 영상Clip을 해당 범주의 조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구성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59세의 일반 성인남녀로서,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층화표집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조사는 2006년 12월 8일부터 2007년 1월 9일까지, 총 1001명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두 가지 조사시행에 있어서 첫 번째 설문조사는 일종의 사전조사로서 모두에게 시행되었고, 두 번째 실험연구는 영상물 비교분석의 목적을 설명하고, 영상물 시청에 동의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본 조사의 실사는 해당 세 가지 수준의 영상물(Clips)은 노트북 컴퓨터에 탑재되어, 응답자가 최대한 외부환경/자극에 노출되지 않는 차단된 공간에서 각 영상물을 직접 시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한국인의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인식태도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하여 대체로 우호적·허용적인 관점에 동의하는 율이 부정적·규제적인 관점에 대해 동의하는 율보다 더 높다. <표 2>의 윗부분인 우호적·허용적 관점에 해당하는 5개 문항들의 평균값은 모두 3점보다 높아 '그렇다'고 긍정하는 쪽으로 기

울어져 있다. 반면, 성표현물에 대하여 부정적·규제적 관점을 취하는 경우는 특별히 “청소년 보호”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성인과 사회의 입장”에서 부정적 또는 규제적 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동의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태도 응답분포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인식태도		응답범주(%)					평 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우호적 허용적 관점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7	5.2	21.3	56.7	15.1	3.78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성적 욕망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필요악이다.	7.0	20.5	28.1	35.4	9.1	3.19
	노골적인 성표현물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다	2.9	15.6	30.9	43.0	7.7	3.37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보기 원하는 성인에게는 누구나 접근이 허락되어야 한다	5.8	15.0	31.5	35.7	12.1	3.33
	노골적인 성표현물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4.8	12.4	38.9	42.0	12.0	3.44
부정적 규제적 관점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청소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3.0	12.0	18.6	44.7	21.8	3.70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1.0	4.0	9.2	45.7	40.2	4.20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6.1	31.0	26.7	30.9	5.4	2.99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성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12.3	41.2	26.4	17.8	2.4	2.57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성인에게도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30.9	39.3	18.9	10.2	0.8	2.11

* 주) 각 문항에 대해 각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응답함.

다음 <표 3>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표현물에 대한 인식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성별로 볼 때, 남성이 여성들에 비해 성표현물에 대해 우호적·허용적 태도수준 다소 높지만, 두 집단 평균 모두 3.0이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인들은 성표현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표현물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대해서는 남성은 다소 비동의(2.94)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여성은 부정적 태도를 수용하는 경향(3.28)을 보여 큰 대조를 이룬다.

<표 3>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표현물 인식태도 차이

구 분		우호적·허용적 태도		부정적·규제지향적 태도	
		평균(SD)	유의도 (LSD)	평균(SD)	유의도 (LSD)
전 체		3.42 (.61)		3.11(.67)	
성 별	남자(499명)	3.54 (.61)	t=6.33***	2.94 (.66)	t=-8.43***
	여자(502명)	3.30 (.59)		3.28 (.63)	
연 령	(1) 20대(294명)	3.46 (.61)	F=8.72*** (123/4) (2/3)	2.99 (.67)	F=6.69*** (1/234) (2/4)
	(2) 30대(275명)	3.52 (.60)		3.11 (.67)	
	(3) 40대(255명)	3.41 (.62)		3.15 (.65)	
	(4) 50대(177명)	3.23 (.62)		3.26 (.67)	
혼인여부	독신(331명)	3.50 (.59)	t=2.66**	2.98 (.65)	t=-4.31***
	기혼(668명)	3.39 (.63)		3.17 (.67)	
교육수준	(1) 중학교 이하(41명)	3.10 (.68)	F=6.00*** (1/23)	3.28 (.63)	F=6.17** (1/23)
	(2) 고등학교(444명)	3.42 (.62)		3.18 (.69)	
	(3) 대학교 이상(516명)	3.43 (.61)		3.04 (.64)	
소득수준	(1) 하(200만원 미만)(116명)	3.39 (.59)	N.S.	3.11 (.73)	N.S.
	(2) 중(200-399만원)(626명)	3.41 (.61)		3.13 (.65)	
	(3) 상(400만원 이상)(259명)	3.45 (.63)		3.06 (.69)	
직업유형	(1) 정신노동자(244명)	3.48 (.54)	F=3.52* (12/3)	3.09 (.59)	F=11.30*** (12/34, 3/4)
	(2) 육체노동자(452명)	3.45 (.64)		3.08 (.68)	
	(3) 주부(184명)	3.30 (.66)		3.34 (.64)	
	(4) 학생 및 기타(121명)	3.39 (.60)		2.91 (.73)	
종교유무	없음(459명)	3.46 (.57)	N.S.	3.11 (.66)	N.S.
	있음(542명)	3.39 (.66)		3.12 (.68)	

* $p<.05$, ** $p<.01$, *** $p<.001$ 에서 유의미; N.S. = Non Significance(무의미함)

* 주 : 평균의 응답범주는 1에서 5까지이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는 별로 그렇지 않다, '3'은 그저그렇다, '4'는 대체로 그렇다 '5'는 정말 그렇다 등을 각기 부호화한 것이다. 따라서 집단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우호적(허용적) 태도 또는 부정적(규제지향적) 태도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령 집단간에도 성표현물에 대한 인식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즉 연령이 많은 집단들일수록 우호적 관점은 다소 약해지고, 부정적·규제지향적 관점을 수용하는 경향이 더 높다. 혼인여부에 있어서도 일정한 인식태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독신들이 기혼자들에 비해 성표현물에 보다 허용적인 반면, 규제지향적 관점에 비동의하는 성향이 높다. 한편, 교육수준과

성표현물에 대한 인식태도와 의 관계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들이 성표현물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성표현물에 대해 부정적·규제지향적 태도를 지니는 경향이 높다. 직업유형별 차이를 보면, 주부집단이 다른 직업집단들에 비해서 부정적·규제지향적 태도가 강한데, 이는 직업유형의 차이라기 보다는 성별차이가 반영된 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소득차이나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성표현물에 대한 인식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요컨대, 성표현물과 연관된 국민의식이나 법 감정은 사실상 “성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 관점차이가 매우 큰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음란물을 둘러싼 성표현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은 성별·연령별 집단간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도 연관됨을 시사한다.

2. 성 표현의 규제수준에 관한 인식태도

노골적인 성표현물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위 “선정성 및 음란성” 시비와 연관된 표현내용 및 수준들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각 표현장면들의 규제(금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는 작업은 현행 음란물의 법적 근거에 새로운 기준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2개의 문제 표현들이 한국인들의 인식속에서 어떻게 틀 지워지는지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두 개의 차원(요인)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1은 “성기노출”을 중심으로 한 소위 “하드코어(hard-core)”라고 불릴 수 있는 표현내용들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고, 요인2는 성기노출이 없는 단순 또는 부분나체중심의 “소프트코어(soft-core)”로 칭할 수 있는 표현내용들로 묶여 있다.¹⁰⁾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한국인들의 의식에 있어서 “성기노출 여부”는 성표현물의 표현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요인1과 요인2는 비슷한 성표현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서로 다른 표현수

10) 여기에서 의미하는 “하드코어”와 “소프트코어”는 외국 법제에서 의미하는 분류체계와는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표현의 상대적인 표현수위에 따른 구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드코어’와 ‘소프트코어’의 구분은 해당사회의 문화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주내용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 성표현물 표현수준에 관한 요인분석

구 분	문 항	요인1	요인2	communality
하드코어 (hard-core) 표현	성기노출된 오랄섹스(구강성교)	.851	.178	.755
	성기노출된 성행위(성기와 성기접촉)	.818	.214	.716
	성기노출된 성기의 애무(손)	.798	.252	.701
	성기 노출된 자위행위	.784	.245	.675
	성기노출 없는 오랄섹스(구강성교)	.605	.454	.573
	폭행, 고문 등을 동반한 피/가학적 성행위	.561	.048	.317
소프트코어 (soft-core) 표현	엉덩이 노출	.060	.882	.782
	가슴 노출	.062	.866	.750
	성기노출 없는 성기의 애무(손)	.476	.605	.592
	성기노출 없는 자위행위	.445	.595	.553
	완전나체	.446	.586	.542
	성기노출 없는 성행위(성기와 성기 접촉)	.476	.573	.555
고 유 치 (Eigenvalue)		5.98	1.53	

성표현물의 표현수준과 연관된 규제 또는 허용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요약하면, 소위 ‘하드코어’ 표현으로 묶여지는 성기노출 관련 표현들 및 피/가학적 성행위 등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금지입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비록 성기노출은 없지만 구강성교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다소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소프트코어’한 표현으로 묶여지는 부분나체 표현에 대해서는 허용적 태도가 강하며, 나체, 성기노출없는 애무, 자위행위, 성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와 유보, 허용의 관점들이 비교적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표현내용을 둘러싸고 가치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내용들은 적어도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하드코어와 비슷한 차원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표 5> 성표현물 표현수준 및 내용에 관한 허용도

문 항		응답범주(%)			평 균
		금지(1)	유보(2)	허용(3)	
하드코어 (hard-core) 표현	성기노출된 오랄섹스(구강성교)	62.0	21.8	16.2	1.54
	성기노출된 성행위(성기와 성기접촉)	63.5	19.2	17.3	1.54
	성기노출된 성기의 애무(손)	56.6	20.4	23.0	1.66
	성기 노출된 자위행위	63.3	19.3	17.4	1.54
	성기노출 없는 오랄섹스(구강성교)	45.9	25.5	28.7	1.83
	폭행, 고문 등을 동반한 피/가학적 성행위	79.2	13.9	6.9	1.28
소프트코어 (soft-core) 표현	엉덩이 노출	16.5	10.3	73.2	2.57
	가슴 노출	14.7	10.9	74.4	2.60
	성기노출 없는 성기의 애무(손)	34.9	21.4	43.8	2.09
	성기노출 없는 자위행위	39.1	22.8	38.2	1.99
	완전나체	44.4	20.7	35.0	1.91
	성기노출 없는 성행위(성기와 성기 접촉)	40.4	22.2	37.5	1.97

* 주 : 평균의 응답범주는 1에서 3까지이다. ‘1’은 금지 ‘2’는 유보 ‘3’은 허용 등을 각기 부호화한 것이다. 따라서 집단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소프트코어” 표현규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응답평균은 2.19로 유보와 허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하드코어” 표현규제에 대해서는 1.59로 확연히 금지와 유보사이로 응답함으로써, 하드코어에 대한 규제와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합의가능성이 높다. 다만, 성별과 연령별 집단차이를 고려해 볼 때, 소프트코어한 표현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다소 가치갈등이 발생될 여지는 존재한다. 여성들과 50대집단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각기 1.98, 1.91로서 ‘금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남성들과 20대~40대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유보-허용’의 입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하드코어” 표현규제와 관련해서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특히 주부 집단 층에서 해당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호를 강하게 나타내지만, 다른 집단들 역시 응답평균값은 1.4~1.7로서 ‘금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별다른 가치갈등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표현물 표현수준 및 내용에 관한 허용도

구 분	소프트코어 허용도		하드코어 허용도	
	평균(SD)	유의도(LSD)	평균(SD)	유의도(LSD)
전 체	2.19(.64)		1.59(.59)	
성 별	남자(499명)	t=10.80***	1.74 (.59)	t=8.54***
	여자(502명)		1.44 (.54)	
연 령	(1) 20대(294명)	F=19.39*** (12/34) (3/4)	1.67 (.61)	F=6.93*** (123/4) (1/3)
	(2) 30대(275명)		1.62 (.58)	
	(3) 40대(255명)		1.57 (.59)	
	(4) 50대(177명)		1.43 (.52)	
교육수준	(1) 중학교이하(41명)	F=21.03*** (1/23) 2/3)	1.31 (.48)	F=5.03*** (1/23)
	(2) 고등학교(444명)		1.59 (.60)	
	(3) 대학교이상(516명)		1.61 (.59)	
소득수준	(1) 하(200만원미만)(116명)	N.S.	1.60 (.63)	N.S.
	(2) 중(200-399만원)(626명)		1.59 (.58)	
	(3) 상(400만원이상)(259명)		1.57 (.60)	
직업유형	(1) 정신노동자(244명)	F=12.08*** (1/23) 2/34 3/4)	1.65 (.59)	F=6.00*** (3/124)
	(2) 육체노동자(452명)		1.59 (.59)	
	(3) 주부(184명)		1.44 (.54)	
	(4) 학생 및 기타(121명)		1.69 (.63)	
종교유무	없음(459명)	t=3.26***	1.61 (.59)	N.S.
	있음(542명)		1.57 (.59)	

* p<.05, ** p<.01, *** p<.001에서 유의미; N.S. = Non Significance(무의미함)

* 주 : 평균의 응답범주는 1에서 3까지이다. 표현허용도의 경우 '1'은 금지, '2'는 유보 '3'은 허용 등을 각기 부호화한 것으로서, 집단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허용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한국인의 현행 음란물법에 대한 인식

2007년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과연 현행 음란물의 법적 규정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다음 <표 7>은 음란물 법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식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각 질문내용의 응답 중 짙은 부분이 현행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다. 응답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음란물법'에 대해 정확

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인들이 음란물 법관련 4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율은 41.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현행 법제도와 국민의 범인지(범감정)이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인들은 ‘음란물’을 성인이 “보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 70%가 알고 있지만, ‘음란물’ 그 자체는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은 58%에 불과했고,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 비율은 24%도 안 된다. 즉 한국인들은 음란물을 “청소년에게만 접근이 규제되는 유해표현물”로 인식하는 비율(70%)이 매우 높다. 전반적으로 ‘음란물’ 그 자체가 범죄이며, 성인에게 제공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비율은 매우 낮다. 이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표 6>의 성표현물 표현수준이나 내용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여부에 대한 태도 역시 다분히 “청소년유해표현물”로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표 7> 우리나라 음란물 법적 규정에 대한 이해수준

우리나라에서...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전 체
‘음란물’은 형법상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583(58.2)	233(23.3)	185(18.5)	1001(100.0)
‘음란물’을 성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238(23.8)	184(18.4)	579(57.8)	1001(100.0)
‘음란물’을 성인이 보는 것도 불법이다.	141(14.1)	174(17.4)	686(68.5)	1001(100.0)
‘음란물’은 청소년에게만 접근이 규제되는 청소년 유해표현물이다.	688(68.7)	153(15.3)	160(16.0)	1001(100.0)

한편, 한국인들은 음란물을 범죄로서 처벌하는데 동의하는 율은 전체 평균이 2.01로서 동의와 비동의 어느 쪽에도 크게 기울어 있지 않다. 분석 결과를 재해석해 보면 대체로 한국인들은 현행 음란물법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로, 자신들이 주변에서 접하는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흔히 대체로 “선정적(57.4%)이거나” “음란하다(61.7%)”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표현물을 범죄로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율과 비동의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법률에서 정의되는 ‘음란’과 현실사회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란’에는 커다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음란성” 개념에 대한 한국인의 법감정 및 법인지는 시대정서에 맞게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로서 처벌동의 수준

구 분		평균(SD)	유의도(LSD)
전 체		2.01(.78)	
성 별	남자(499명)	1.82 (.78)	t=-7.80***
	여자(502명)	2.19 (.74)	
연 령	(1) 20대(294명)	2.00 (.76)	N.S. (2/34)
	(2) 30대(275명)	1.91 (.79)	
	(3) 40대(255명)	2.08 (.78)	
	(4) 50대(177명)	2.06 (.80)	
교육수준	(1) 중학교 이하(41명)	2.12 (.78)	N.S.
	(2) 고등학교(444명)	1.99 (.78)	
	(3) 대학교 이상(516명)	2.01 (.78)	
소득수준	(1) 하(200만원 미만)(116명)	2.03 (.71)	N.S.
	(2) 중(200-399만원)(626명)	2.03 (.79)	
	(3) 상(400만원 이상)(259명)	1.94 (.78)	
직업유형	(1) 정신노동자(244명)	1.89 (.78)	F=7.11*** (12/34)
	(2) 육체노동자(452명)	1.96 (.79)	
	(3) 주부(184명)	2.18 (.74)	
	(4) 학생 및 기타(121명)	2.16 (.74)	
종교유무	없음(459명)	2.03 (.77)	N.S.
	있음(542명)	1.98 (.79)	

* p<.05, ** p<.01, *** p<.001에서 유의미; N.S. = Non Significance(무의미함)

* 주 : 처벌동의수준에 있어서 ‘1’은 비동의, ‘2’는 유보, ‘3’은 동의 등을 각기 부호화한 것으로, 집단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범죄처벌 동의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4. 세 가지 영상물 반응평가 실험연구 결과

가. 영상물 평가항목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앞서 성 표현 규제수준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의 정서에 비추어 ‘성기노출여부’에 따른 구분이 매우 실질적이고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

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각 표현수준별 영상물에 대한 정서반응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① 극장상영물, ② 기소대상물, ③ 금지포르노물에서의 각 성 표현 수위가 수용자 입장에서 각기 어떻게 인지되고 반응되고 있는지, 특히 매체유형별로 현행 음란물 판단기준에 따른 정서반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¹¹⁾

<표 9> 극장상영물에 대한 정서반응 요인분석

구 분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communality
정서적 위해감	불쾌감(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882	.109	-.112	.803
	인간 존엄성을 해쳤다	.860	.013	-.009	.740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850	.171	-.030	.753
	나의 도덕관념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831	.074	-.015	.697
가치중립적 기술적 시각	성적으로 자극적이다	.446	.741	.156	.772
	아무런 느낌이 없다(-)	.273	-.717	.095	.598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다	.185	.686	.395	.661
	성적으로 노골적이다	.472	.666	.070	.671
우호적 및 기능적 관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11	.200	.809	.706
	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20	.171	.752	.595
	오락물 또는 재미거리도 이용될 수 있다	-.008	-.113	.717	.527
고유치 (Eigenvalue)		3.92	2.34	1.27	

실험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성인들에게 각 영상물 클립(Clips)을 시청한 후, 각 성표현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인지도)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 9>와 제시된 바와 같은 11개 문항에 응답하게 하여 각 성 표현 수준에 대한 평가감정을 측정하였다. 성표현물에 대한 반응 및 평가차원들이 어떻게 틀 지워지는지를 평가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통해 알아보았다. 평가항목들이 서로 유사한 관점에 따라 세 요인 군으로 묶이는 패턴은 세 영상클립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정서적 위해감’을 나타내는 문항들, ‘가치중립적 또는 기술적(descriptive) 시각’을 나타내는

11) 소프트웨어 표현과 하드웨어 표현간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성기노출 여부가 가장 크며, 그 구체적인 표현수준과 내용은 <표 5>의 항목들을 참조할 수 있다.

문항들, 그리고 ‘우호적 또는 기능적 느낌’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평가차원이 각기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 클립 모두에게서 나타나는데, 즉 사용된 문항들이 각 영상물의 느낌과 평가수준을 세 차원으로 나누어 잘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현행 판례에서 나타난 음란물 판단기준이 한국인들의 인식차원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판례에서 음란성 판단은 흔히 “성적 흥분효과, 성적 수치심, 선량한 성풍속 또는 사회적 도덕관념 배치 등”과 연관된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인식 및 법감정속에서 “성적 흥분효과”는 특정 표현물에 대한 가치판단적인 지표라기보다 단순기술적 의미에서 노골성 및 자극성 등과 비슷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나. 세 가지 영상물에 대한 반응평가(인지태도)

앞서 요인분석에 나타난 것처럼, 11개 문항들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요인으로 묶인다. 영상물간 평가수준의 보다 분명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각기 한 차원으로 묶이는 문항들의 응답을 합쳐 하나의 복합척도를 구성하여, 그에 대한 세 가지 클립(Clips)간 평가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통계적으로 재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각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방법은 예 대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먼저, 기소대상물과 극장상영물간의 평균차이(paired T-test)를 검토하고, 다시 기소대상물과 금지포르노간의 평균차이(paired T-test)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각 반응차원별로 세 클립(Clips)간의 평가수준은 각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우호적 및 기능적 느낌’과 관련된 평가수준을 보면, 극장상영물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2.75, 그다음이 기소대상물로 2.80, 금지포르노의 경우 2.85로 대체로 큰 차이 없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다시 말해, 세 클립(Clips) 모두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그다지 재미있거나 정보면에서 유익하다거나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이러한 응답경향은 기소대상물이나 금지포르노에 비해 극장상영물에 대해 가장 뚜렷했다.

정서적 위해감(손상감)과 연관된 평가수준을 보면, 극장상영물의 경우에는 평균이 2.38로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매우 기울어 있고, 기소대상물

의 경우에는 2.65로서 극장상영물 보다는 다소 높지만 대체로 해당 클립(Clips)이 정서적 위해감(손상감)을 이끌어내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지포르노물의 경우엔 평가수준이 3.16으로 성적수치심, 불쾌감, 도덕관념배치 및 인간존엄성 손상느낌 등의 반응과 다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 클립(Clips)간 평균차이를 의미하는 t-값을 볼 때, 기소대상물은 극장상영물 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지포르노와의 간극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성적 노골성과 자극성, 흥분효과 등 ‘가치중립적 및 기술적 평가수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극장상영물의 경우 3.32, 기소대상물은 3.60, 금지포르노의 경우는 4.11로 ‘대체로 그렇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세 클립(Clips)간 표현수위의 차이가 매우 극명한데, 각 클립(Clips)간 t-값을 볼 때, 본 기소대상물의 평가수준은 상대적으로 극장영상물 수준에 보다 가깝고, 금지포르노와는 보다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표 10> 영상물 Clip(표현물 유형)에 대한 각 반응차원별 평가수준

항 목	표현물 유형	평균(SD)	유의도(t) (Paired T- test)
우호적 및 기능적 느낌	극장상영물	2.75(.80)	t=-2.46 p<.05
	기소대상물	2.80(.83)	
	금지포르노물	2.85(.98)	t= -2.17 p<.05
정서적 위해감(손상감)	극장상영물	2.38(.89)	t=-12.23 p<.001
	기소대상물	2.65(.96)	
	금지포르노물	3.16(1.07)	t= -21.95 p<.001
가치중립적 및 기술적 시각(느낌)	극장상영물	3.32(.73)	t=-13.66 p<.001
	기소대상물	3.60(.62)	
	금지포르노물	4.11(.59)	t= -27.43 p<.001

<표 11>은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특히 현행법상 음란물 판정지표와 관련된 반응 평가수준 차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각 영상물이 얼마나 성적으로 노골성이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정서적 반응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세 가지 영상물 클립(Clips)

평균값이 3점보다 높다. 특히 금지포르노의 성 표현에 대해서는 4.4 이상으로 매우 성적으로 노골적·자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 11> 영상물 Clip(표현물 유형)별 음란성 판정기준 관련항목 평가수준 차이

항 목		표현물 유형	응답범주(%)					평균(SD)	유의도(t) (Paired T- test)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적 노골성 수준	극장상영물	2.6	16.4	32.2	36.8	11.8	3.33(1.01)	t=-13.33 p<.001	
	기소대상물	0.7	7.2	14.5	51.3	26.3	3.73(.85)		
	금지포르노물	0.0	1.3	3.9	23.0	71.7	4.62(.67)	t= -36.29 p<.001	
성적 자극성 수준	극장상영물	4.1	15.5	33.7	37.7	9.1	3.32(.98)	t=-14.27 p<.001	
	기소대상물	1.5	7.3	22.9	54.3	14.0	3.72(.85)		
	금지포르노물	0.4	2.2	7.5	34.2	55.7	4.43(.76)	t= -26.31 p<.001	
현행법상 음란물 판정 기준	성적 흥분 수준	극장상영물	4.5	15.2	28.8	45.1	6.4	3.34(.96)	t=-7.57 p<.001
		기소대상물	2.6	9.5	27.1	51.9	8.9	3.55(.88)	
		금지포르노물	4.0	6.4	14.5	44.0	31.1	3.92(1.03)	t= -11.34 p<.001
	성적 수치심	극장상영물	16.3	38.0	29.7	12.3	3.7	2.49(1.02)	t=-9.44 p<.001
		기소대상물	13.4	27.9	31.9	20.7	6.1	2.78(1.10)	
		금지포르노물	6.9	20.2	20.8	31.3	20.6	3.39(1.23)	t=-19.35 p<.001
	도덕관념 배치됨	극장상영물	20.6	37.2	28.0	11.2	3.1	2.39(1.03)	t=-5.91 p<.001
		기소대상물	16.4	32.9	32.8	12.8	4.9	2.57(1.06)	
		금지포르노물	11.3	23.6	29.3	24.1	11.8	3.02(1.18)	t= -13.12 p<.001
	인간 존엄성 가치손상	극장상영물	26.6	37.8	25.6	8.2	1.8	2.21(.99)	t=-8.81 p<.001
		기소대상물	20.8	33.8	28.8	11.7	4.8	2.46(1.09)	
		금지포르노물	14.6	24.6	26.1	22.6	12.0	2.93(1.24)	t= -14.69 p<.001

* 주 : 평균의 응답범주는 1에서 5까지이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는 별로 그렇지 않다, '3'은 그저그렇다, '4'는 대체로 그렇다 '5'는 정말 그렇다 등을 각기 부호화한 것이다. 따라서 집단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해당 판정기준의 평가감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 같은 각 표현수준이 과연 현행 법률에 의한 세 가지 음란성 판정기준, 즉 ① 성적 흥분, ② 성적 수치심, ③ 성적 도의관념 저해 등과 더불어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¹²⁾의 주요지표인 ④ “인간존엄성 손상”

12) 헌법재판소 1998.4.40. 95헌가16에 따르면,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예술적·과학적·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의 건

등에 대한 평가항목에 수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측정하였다. 우선, 세 가지 영상 클립(Clips)은 모두 성적으로 노골성 및 자극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된 만큼, 성적 흥분 수준에 있어서도 과반수가 흥분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금지포르노에 대한 평가수준은 매우 높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과 관련해서는 극장상영물 및 기소대상물의 평균값은 3.0이하로 수치심의 자극을 받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응답경향이 높은 반면, 오직 금지포르노에 대해서만 성적 수치심 반응율이 높았다. 해당 표현이 성적 도의관념에 침해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 평가기준과 마찬가지로, 극장상영물과 기소대상물의 평균값은 3.0이하로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 한편, 금지포르노의 경우 해당평균값이 3.02로서 다른 두 클립(Clips)에 비해서는 성적 도의관념 위해도 수준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저그렇다”는 중립적 견해가 우세하다. 마지막으로 해당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는 세 가지 영상 클립(Clips) 모두 평균값은 3.0이하로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경향이 지배적이다.

분석결과는 종합해 보면, 성적 노골성(자극성)과 음란물 판정기준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서반응에는 상당한 거리와 격차가 있다. 오늘날 한국인 평균적인 법 감정 및 정서반응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성적 노골성이나 자극성 수준이 높은 성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흥분을 제외하면, 현행 음란물 규정에 따른 판정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즉, 이제까지 판례나 사법실무에서 당연하게 전제되어 왔던 ‘성적 노골성과 수치심·도덕관념배치간의 기계적 연관’은 현실세계의 국민 법감정에서는 지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 규정과 같이 성적 노골성과 음란성을 일정한 규범적 가치판단하에 동일하게 취급하는 입법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한편, 세 가지 영상물의 표현수위는 각 평가항목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의 노골성 수준이나 규범적 가치판단(도덕관념배치 및 인간존엄성 등)에 초점을 두면, 각 표현수준이 함축하는 영향력의 차이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본 연구결과는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기노출여부’가 가장 실질적인 판정기준

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질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카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될 수 있음을 예시한다.

다. 세 가지 영상물에 대한 규제태도

세 가지 영상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1) 해당 영상물을 규제 또는 금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 (2) 해당 영상물의 제작과 유통을 ‘범죄행위’로서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로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표 13>과 같다. 한국인의 대부분(77%~94%)은 세 가지 노골적인 성 표현물(심지어 금지포르노물조차)을 보고 난 후, “청소년에게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하고, 보기를 원하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접근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금지포르노물의 경우,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3%가 존재한다.

해당 영상물의 제작·유통을 형사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대부분은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극장상영물의 경우엔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25% 정도이고, 기소대상물의 경우에도 13% 정도는 형사처벌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금지포르노에 대해서는 성인이나 청소년 가릴 것 없이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 수준으로 다른 두 영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2> 영상물 Clip(표현물 유형)별 규제의 필요성 여부

	표현물 유형	본 영상물은…(%)			평균(SD)	유의도(t) (Paired T- test)
		규제 필요없음	청소년에게만 금지(규제)	성인에게도 금지(규제)		
규제 및 금지의 필요성	극장상영물	11.8	82.2	6.0	1.94(.42)	t=-5.94 p<.001
	기소대상물	6.5	85.4	8.1	2.02(.38)	
	금지포르노물	2.2	74.9	22.8	2.21(.46)	t= -13.46 p<.001

<표 13> 영상물 Clip(표현물 유형)별 형사처벌 필요성 여부

형사처벌의 필요성	표현물 유형	본 영상물은...(%)			평균(SD)	유의도(t) (Paired T- test)
		형사처벌 필요없음	청소년에게 제공행위만 형사처벌	성인에게 제공행위도 형사처벌		
	극장상영물	24.7	69.4	5.9	1.81(.52)	t=-10.01 p<.001
	기소대상물	12.8	79.3	7.9	1.95(.45)	
	금지포르노물	5.7	71.8	22.5	2.17(.50)	t= -14.02 p<.001

본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오늘날 한국인들은 노골적인 성표현물들을 소위 ‘선정적이라거나 음란하다’라는 용어로서 평가하지만, 이러한 표현물을 ‘범죄’로 규정,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음란물”이라는 용어와 형법적 규정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음란한(?) 성표현물’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는 인식하며, 그 근거는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음란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의 범의식에 비추어 볼 때, 노골적인 성표현물 규제는 하드코어와 소프트코어로 나누어 접근하는 입법정책을 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소위 “성기노출을 중심으로 한 하드코어한 표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금지동의율 매우 높은 반면에, 다소 노골적이지만 성기노출없는 성표현(기소대상물)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극장상영물 수준과 큰 차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허용도 역시 높다. 다만, 극장상영물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제한되어야 할 성인용 유해표현물로서 인식·평가되고 있다.

V. 요약 및 토론

금번 매체실험연구와 조사는 21세기 한국인들의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해 가지는 입장과 생각의 흐름을 알게 해 줌과 더불어, 음란물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입법정책간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좀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토론의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적 의미에서의 ‘음란’의 법적 성격과 현실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음란’ 개념 간에는 커다란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한다. 형법상 음란물 규정은 “① 성적 흥분 효과, ② 성적 수치심 자극, ③ 사회적 도덕관념과 배치”된 표현물을 의미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음란”이란 주변에서 접하는 “노골적인 또는 선정적 성표현물”과 거의 동의어로써, 해당 표현물을 범죄로 규정,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율이 높다. 또한 일반인들은 현행 음란물법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며, 다만 음란물은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향후 음란물 규제정책의 보호법익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음란물 규제정책은 주로 성적 노골성의 측면에 국한되어 왔다. 현행 음란물의 구성요건에 따르면, “보통인의 호색적 흥미를 자극(성욕의 흥분·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요건 아래에서는 음란물과 애정선정물(비폭력적, 비종속적인 노골적 성표현물)은 거의 변별되지 않고, 양자는 모두 성적으로 노골적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음란성’을 기본적으로 ‘성적 자극’이나 ‘성적 수치심’ 등에 국한시켜 규정하는, 즉 ‘성적 노골성’과 ‘음란성’을 동일시하는 시각에는 “성 및 성에 대한 공공연한 표현은 부도덕한 혹은 반-사회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가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판례나 사법실무에서 당연하게 전제되어 왔던 ‘성적 노골성과 수치심·도덕관념 배치간의 기계적 연관’은 현실세계의 국민 법감정에서는 지지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폭력적인 요소도, 비인간적인 요소를 담지 않는 성표현물(애정선정물)은 대체로 성적 흥분효과를 일으키나 그것이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정서적 위해감(도덕관념배치나 존엄성손상)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즉, 일반인의 법감정에 기초할 때, ‘성적 노골성=음란성’이라는 단순도식은 지지되기 어렵다. 애정선정물의 표현양태와 방법은 분명히 음란

물과는 다르며, 또한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효과도 음란물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 처리는 음란물과 차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성표현물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합리적인 형사정책수립에 매우 필요하다. 더욱이 현행 음란판정기준이 되고 있는 “성적 흥분효과”는 일반인들의 정서반응에 있어서, 노골성 및 자극성 등과 같이 “기술적(descriptive)” 차원에서 수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음란물 판정의 핵심요소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검토를 요한다. 따라서 현행 음란물 규제정책에서 성적 노골성과 음란성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입법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음란물에 대한 현행 형사법적 규제는 한국인들의 정서반응과 법의식과는 상당한 거리와 격차가 있다. 현행 본 실험대상이 된 기소영상물에 대하여 법원은 2007년 6월 29일 제1심에서 음란물로 판정하였지만,¹³⁾ 한국인들은 기소영상물에 대하여 극장상영물에 비해서 보다 노골적·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도덕관념에 배치 또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표현물이라고 판정하지는 않고, 다만 청소년 보호관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국인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노골적인 성표현물 규제는 하드코어와 소프트코어로 나누어 접근하는 입법정책을 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소위 “성기노출을 중심으로 한 하드코어한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에, 성기노출없는 소프트코어한 표현(기소대상물)에 대한 반응평가는 극장상영물과 비슷하고, 허용도 역시 높았다. 다시 말해, 성기노출이 없는 비폭력적 성애장면(소프트코어한 표현)을 음란물로서 규정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인들의 법의식(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다. 단순히 표현의 노골성 수준이나 규범적 가치판단(도덕관념배치 및 인간존엄성 등)에 초점을 두면, 각 표현수준이 함축하는 영향력의 차이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본 연구결과는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기노출여부’가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예시한다.

넷째,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성적 노골성’에 제한되는 경우에

13) “...이 사건 영상이 포르노그래피에 비하여 노출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청할 수 없는 음란물에 해당한다...(사건번호 2005고단1603, 2005고단1815(병합))”

는, 인간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더욱 타락시키는 표현물의 문제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현행 법률이 인간 존재를 타락시키는 좀더 심각한 표현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표현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행의 법적 규제와 그 관행은 성적 노골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폭력’의 묘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방비하며, 심지어 좀더 ‘관용적’이기까지 한가에 대해 세심 규제의 형평성에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전쟁, 폭력, 살인 등으로 인간을 파괴시키고 제거시키는 행위를 매우 ‘멋진’ 것으로 묘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로 삼지 않으면서도, 몇 백년이래로 인간의 성적 활동을 표현·묘사하는 것을 ‘음란’으로 규정하여 범죄로 삼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보여진다. 실제 다양한 매체실험연구결과가 시사하듯이, 유해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을 수반한 성적 자극이다. 비록 성적으로 감각적인 자극요소가 교묘히 제거되어 있는 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을 물화시키고 지배 및 억압 또는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그릇된 삶에 대한 기대나 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물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지대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성적 묘사만 없으면, 비인간화된 성을 다루거나, 특히 ‘강간신화’ 등을 교묘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도 관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현실의 음란물 규제정책은 가치전도된 문제의식 속에서 “무엇”을 “왜” 규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배제시킨 채, 밑도 끝도 없는 방향을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

다섯째,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각종 표현물에 대하여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등급을 판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등급에 따라 차등적,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2005고단1603]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표현물의 음란성 판정여부는 여전히 별도의 과정으로 남아있다. 음란물 규제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체제작 및 유통환경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와 표현 규제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접근가능하다는 이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장을 청소년의 감각수준으로 과도하게 규제, 제한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표현의 세계와 다양한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세계와 문화의 필연적 요구이다. 문화와 가치 표현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의 규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 두 가지 영역을 적절히 조정·관리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 권창국, 2002,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49호), 235-261.
- 김영환 · 이경재, 1992, 음란물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1998,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강우, 2001, ‘형법상 음란개념의 재구성’,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63-277.
- 박미숙, 2001,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재, 1997, ‘성과 법, 자유와 규제: 성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39호, 1997년 1·2월호), 12-21.
- Abramson, P and Hayashi, 1984, Pornography in Japan, in Malamuth and E. Donnerstein(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Y.: Academic Press: 178-183.
- Baron, L. and M. Straus (1987), ‘Four theories of rape: A macrosociological analysis’, Social Problems, V.34: 467-89.
- Bow, J.N., Bailey, R.W., Samet, C, 2005, “Forensic evaluation of Internet sexual activity”,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PRACTICE Volume: 5 Issue: 2 Pages:

1-29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Y.: Simon & Schuster.
- Dworkin, A., 1981,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N.Y. : G.P. Putnam's Sons.
- Dworkin, A., 1985, 'Against the male flood: Censorship, pornography and Equality', *Harvard Women's Law Journal* 8:1-19.
- Jellison, W. A., McConnell, A. R., Gabriel, S., 2004,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of Sexual Orientation Attitudes: In group Preferences and Related Behaviors and Beliefs Among Gay and Straight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0 No.5.
- Kersten, J., 1996, 'Culture, masculinities and violenc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3):381-395.
- Linz, D. and N. Malamuth, 1993, *pornography*, Newbury Park, CA: Sage.
- MacKinnon, C., 1984, 'Not a moral issue', *Yale Law and Policy Review* 2: 321-45.
- Malamuth, N. M. and Check, J.V.P., 1985, 'the effect of aggressive pornography and beliefs in rape myths: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299-320.
- Malamuth, N.M. and Briere, J. 1986, Sexual violence in the media: indirect effects on aggression against women(U.S. and Canada),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V.42: 75-92.
- Morgan, R., 1980, 'Theory and Practice: pornography and rape', in L. Lederer(ed.), *Take Back the Night: Women on Pornography*, N.Y.: William Morrow:134-140.
- Morrison, T. G., Ellis, S. R., Morrison, M. A., Bearden, A., Harriman, R. L., 2006,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Variations in Body Esteem, Genital Attitudes, and Sexual Esteem among a Sample of Canadian Men", *JOURNAL OF*

MENS STUDIES, Vol.14 No.2.

Rattermen, D., 1982, 'Pornography: the Spectrum of Harm',
Aegis(Autumn):42-52.

U.S. Department of Justice, 1986,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Final Report, vol.1, 2; Washington D.C.

A Study 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Korean's Consciousness and the Legal Concept Around the Obscene Materials

Kim, Eun-Kyung*

This paper is designed in order to explore the problems and limits of “obscenity” definition based on current criminal law and its regulation policy responding on the sexually explicit material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 (1) to stand ou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Korean's legal consciousness and the legal concept around the obscene materials through 'the national self-reported survey on general attitudes abou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2007';
- (2) to figure out to distinguish between the sexual explicitness and obscenity for the decision of control about sexual representations;
- (3) to illustrate the fact that the analysis of the effects to three types of sexual representations examine the validity of four legal criteria about “obscenity”, and are based much more on the general consciousness on social contents of materials rather than on the sexual explicitness of representations, in other to practice rationall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s to obscene materials.

주제어 : 음란, 음란물, 노골적인 성표현물, 포르노그래피, 매체접촉효과
Keywords : Obscenity, obscene material, explicit sexual material,
pornography

*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Sociology